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약칭: 산업기술혁신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36호, 2020. 12. 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 제16조(신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 5. 24.]

부칙 <제17636호, 2020. 12. 8.> (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5호, 2022. 6. 2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 제18조의5(신제품 인증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기술”은 “신제품”으로, “신기술 인증심사”는 “신제품 인증심사”로 본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평가 및 제품시험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제품 인증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11. 23.]

제19조(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3.>

1.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일 것
 2.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3.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을 것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5.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6.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21. 1. 19.>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 식품
 - 나. 의약품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새로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 1. 19.>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신제품 인증의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19.>
- [전문개정 2009. 4. 30.]

제20조(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3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7. 9. 15., 2021. 1. 19.>

1. 삭제 <2017. 9. 15.>
 2. 삭제 <2017. 9. 15.>
 - ② 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기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21. 1. 19.>
 - 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1.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닐 것
 - ④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서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제품 인증서를 연장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 ⑦ 신제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과 제18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11. 23., 2021. 1. 19.>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를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9.>
 - ⑨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2021. 1. 19.>
- [전문개정 2009. 4. 30.]

부칙 <제32725호, 2022. 6. 2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 2022.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2., 2017. 1. 26., 2017. 9. 15., 2021. 1. 18.>

1.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사.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 18.>
-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 18.]

[중전 제2조의6은 제2조의7로 이동 <2021. 1. 18.>]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2021. 1. 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2017. 9. 15.>

[본조신설 2011. 11. 25.]

[제2조의6에서 이동 <2021. 1. 18.>]

부칙 <제448호, 2022. 1.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